계약일반조건

갑 : 경북보건대학교
을 : 용역수급자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“을”이 “갑” 소유의 장비에 대한 정비보수를 제공하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 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① “예방정비”라 함은 장비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“을”이 1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장비의 점검, 성능튜닝, 부품의 교환 등 일체의 예방조치를 의미한다.

② “장애정비”라 함은 장비의 이상이 있는 경우 “갑”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장비의 수리, 부품 교환 등 일련의 장애 해결조치를 의미한다.

③ “정비보수”라 함은 위 ①항의 “예방보수”와 ②항의 “장애보수”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.

제3조(계약기간)

① 계약기간은 2022년 03월 01일 ~ 2023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.

② “갑”은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통보하고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 단,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.

③ 계약기간을 연장 할 경우 계약금액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정비보수 대상) 이 계약의 유지보수 대상은 별첨 “장비내역서”와 같다.

제5조(정비보수 범위 및 방법)

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양호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방정비 및 장애정비를 수행한다.

② 예방정비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시기 및 일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하여 정한다.

③ 정비보수에 대한 “을”의 정상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09:00~18:00으로 하며 토요일은 09:00~13:00으로 한다. 공휴일은 제외한다.

④ “을”은 위 제③항의 정상근무시간 내에 “갑”으로부터 장애발생을 통보 받은 때에는 비록 응대 및 조치하는 시간이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시간 이내 원격지원을 하여야 하며, 원격지원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재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재신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.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동종기기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장애발생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이 제③항의 정비보수 시간 이후일 경우 익일 오전 9시에 통보한 것으로 한다.

⑤ 예방보수 및 장애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⑥ “을”은 정비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내용을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“갑”의 관련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 “갑”에게 제출 한다.

⑦ 계약 후 즉시 정비보수 대상 장비의 제조사 또는 총판사, 총판사가 인정한 재판매사업자(리셀러)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 및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

⑧ 정비보수에 대한 적용 시간은 24시간, 365일로 한다.

⑨ “을”은 “갑”의 계획에 의한 장비의 보수, 개조,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인력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체상금)

① "을"이 위 제5조 제④항의 시간 이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“0.25%/1일”의 지체

상금율을 적용하여 시간단위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고 지체된 시간 만큼의 지체상금을 "갑"은 익월 월 정비보수료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.

② 만약, 정비보수에 5시간 10분이 초과되었을 경우 계산식은 "{[(연간계약금액 × 0.25%)÷24시간]×6시간}"과 같다.

제7조(대가의 지급)

① "갑"은 정비보수비로 계약금액(부가세포함)을 "을"에게 월 단위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.

② "을"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정비보수비에 대하여 정비보수 작업내용을 첨부하여 "갑"에게 청구하고 "갑"은 청구일로부터 5일(은행영업일) 이내에 "을"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.

③ 계약해지 시 1개월 미만에 대한 해당 월의 정비보수비는 일할 계산한다.

제8조(장비의 이전 설치)

① 정비보수 대상 장비를 기설치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"갑"은 사전에 "을"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"갑"의 부담으로 하며 "을"은 장비의 해체나 재조립 등과 같은 기술용역은 무상으로 제공한다.

제9조(비밀유지 의무)

① "을"은 정비보수의 목적으로 "갑"의 장비 설치 장소에 출입을 할 때에는 "갑"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또한 "갑"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 "을"은 전항의 출입으로 인하여 지득하게 되는 "갑"의 모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채권의 양도금지)

① "을"은 "갑"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본 계약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양도할 수 없다.

② 계약보증금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.

제11조(손해배상) "을"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귀책사유, 수행능력의 부족 및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로 "갑"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"갑"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"을"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초래한 침해 및 손해는 "을"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"갑"을 면책시킨다.

제12조(계약내용의 변경) 계약내용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"갑" 또는 "을"은 계약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계약변경 희망일 10일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
① 본 계약기간 중 "을"이 부도, 거래정지,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및 법정관리 등에 처한 경우 "갑"은 "을"의 동의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② "갑" 또는 "을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.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비보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"을"이 아무런 이유없이 정비보수 용역을 거부하는 때
2. "갑" 또는 "을"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3. "갑"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

제14조(기타)

①계약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른다.

②계약에 관한 소송은 "갑"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③계약체결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